

## 2018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어선감척)사업 신청안내

1. **(목적)**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안내를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안내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3.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어선감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안내서에 기재된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집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구비서류포함)
  - 2)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3)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4.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① 감척대상 어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연근 해어업의 어업자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붙임1)에 의한다.
  - 사업 계획 및 신청대상 업종

사업명	계획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군비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어선감척)사업	1척	49,225	39,380	9,845	

\* 사업비 및 사업계획은 변동될 수 있으며 총사업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

○ 대상업종 : 복합, 통발, 선망, 자망, 이동성구획어업

○ 신청기간 : 2018. 9. 17.(월) ~ 9. 27.(목)까지

○ 조업실적 산출기간

- 2017. 9. 17. ~ 2018. 9. 16.(1년간)
- 2016. 9. 17. ~ 2018. 9. 16.(2년간)

○ 신청 자격 및 제한 조건

- 어선감척 사업 대상자 선정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역 감척대상 어업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감척하고자하는 어선(선령 6년 이상)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소유(공동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다만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을 소유한자가 감척목표 수량에 부족할 경우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도 포함 시킬 수 있으며,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사업지침에 따른다.(출·입항신고 실적, 면세유 구입실적 등)
-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잔존가치 평가액만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 어선감척 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국제감척 및 소형기선 저인망 정리사업포함)의 사업자로 선정(사업비 지급 확정일)되어 어선을 감척한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다시 사업에 참가하려고하는 자는 신청참가 자격이 없다.
- 총 톤수 2톤 미만 어선으로서 임의 대체로 어선등록사항과 상이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총톤수를 다시 측정하여 변경등록을 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는 신청참가 자격이 없다.

5.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6항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선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어업자에게 통보한다(붙임 2).

- \* 신청결과 신청자가 제시한 금액이 기초가격보다 높은 경우, 조업실적 미충족 등 신청자격 및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무효
- ②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6.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 사업대상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 1)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 2) 규모가 큰 어선
- 3)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 4)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어선
- 5)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
- 6) 어선소유자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7.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의 평가) ① 평가방법 및 기준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어선·어구, 어선의 장비·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붙임3)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 ② 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고, 감척지원금 지급 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정한다.
- ③ 사업대상자의 어선에 설치된 장비 등은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 받기 전에 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된 장비 등의 잔존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금에서 제외한다.
- ④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입지원금 지급전에 어선이 침몰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종 사업대상자가 부담한다.

- 1) 매입지원금의 결정전에 화재, 침몰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
- 2) 어업인이 대상어선을 인도하기 전에 파손 된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 3) 매입지원금이 결정된 후에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침몰한 경우 결정된 매입지원금에서 보험(공제 포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 8. (어선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어선·어구 등의 매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붙임4)의 어선·어구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집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②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붙임5)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집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9. (불이행시 제재 조치)** ①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자에게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매입지원금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가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어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①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주체가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완료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30일 범위 내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 ③ 사업대상자가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0. **(부정당업자의 감척사업 신청 자격 제한)**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어선감척사업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직권감척은 제외)
11. **(기타사항)** 어선감척 신청공고 조건 및 이 안내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주체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

해      남      군



【붙임1】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연안어업)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희망하는 폐업지원금의 액수	신청금액 : 예시) 금 27,215,000원(금이천칠백이십일만오천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 \* 제시한 금액이 업종· 톤급별 가격보다 높고, 감척대상 업종이 아닐 경우 등  
동 사업 지침에 따른 신청자격 및 조건에 맞지 않는 신청은 무효입니다.
- \*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어선감척으로 지원받은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다시 사업에 참가할 경우 사업 신청자격에서 제한합니다.  
☞ 참가자격, 기타사항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연안어선감척사업 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관련 규정, 지침 등을 따르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  
사유임을 알려 드립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선적증서 사본 1부 - 검사증서 사본 1부 - 어선사진(전후좌우 각 1매) - 출·입항신고실적 1부(관할 해양경찰(파출)서 발급) - 유류공급실적 1부(관할 수산업협동조합 발급)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기안·결재	대상자 선정	통보
신청인	해 남 군 수				

210mm x 297mm[백상지 80g/m<sup>2</sup>]

【붙임2】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 선정 통지서  
 직권

어선 소유자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지원 내용	1. 어선 · 어구의 매입: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 지급 2. 폐업지원금: ( )원 예상 3. 그 밖에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개월분) 등 지원	
어선 감척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척 대상 어선의 감척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감척 대상 어선의 감정평가 → 폐업지원금의 산정 → 어선 · 어구의 인수 및 해체 처리 → 어업 폐업 신고 → 지원금의 지급</li> <li>○ 감척 대상 어선의 감정평가에서부터 지원금의 지급까지 약 2 ~ 5개월 걸립니다.</li> </ul>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 ·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 . .

해 남 군 수

직인

### 【불임3】

## 어선· 어구 및 어업시설물 평가기준

### 1. 어선 · 어구 및 어업시설물 평가기준

가. 감정평가사가 어선감척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평가하되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하는 유형 고정자산 연수표를 참고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나. 평가할 사항

#### 1) 선체

- 선체는 총톤수 기준이며 구톤수일 경우 신톤수로 환산하며 선종, 선질, 구조, 설비, 시공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조 단가를 적용하고 평가연수, 관리 상태 등을 참작하여 감가 수정한다.
- 선체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하여 평가한다.

<어선의 선질별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

선 질	내용연수(년)	잔존가치율(%)
강 선	25	20
FRP	20	10
목	15	10

#### 2) 기관

- 기관은 해상용 기관과 육상용 기관으로 구별하여야 하며 실제 마력을 기준으로 하여 제작년월, 제작회사, 규격, 회전수 등을 고려하여 재조달 원가를 결정하고 경과연수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가 수정한다.
- 어선은 대부분 보조기관을 시설하고 있으므로 현장조사 시 엔진의 중고 구입여부 등에 대하여 세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기관에 대한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

시설물명	내용연수(년)	잔존가치율(%)
기 관	20	10

#### 3) 의장품

- 의장품에 대한 평가는 복성식평가법 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복성식평가법은 대상물건별로 재조달원가를 정한 후 정율법과 관찰 감가법을 고려하여 감가 수정한다.

- 의장품의 종류는 어로활동에 필요한 기기류, 항해용기기류, 법정 비품류 등 여러 종류의 의장품으로서 산출기관이 인정한 범위로 한다.
- 의장품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되어야 할 것은 제작년월, 회사명, 규격, 재질 등이며 의장품의 종류에 따라 규격, 재질 등 동일한 물건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 그 중에서는 불용품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의장품 중 내용연수 3년 미만인 품목에 대해서는 업종별 동 규모 어선의 어업인 평균 보유수량 2배 이내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산출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 평가할 수 되어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의장품에 대한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

시설물명	내용연수(년)	잔존가치율(%)
의장품	15	10

#### 4) 어구

- 어구의 평가는 복성식평가법으로 평가하되 신품 또는 중고 상태로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비준가격으로 평가하되 복성가격으로 평가할 경우 감가 수정은 정률법과 관찰감가법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어구는 경기변동에 민감하므로 재조달원가의 파악에 유의하여야 하고 내용 연수가 대부분 3년 미만이므로 감가수정에 유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어선별 어구는 예비망을 포함한 업종별 동 규모어선의 평균 보유수량 2배의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야 하나, 평가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 평가할 수 되어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대응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소모성 어구를 가진 업종은 연승어업이며, 내구성 어구이나 유실에 의하여 소모되는 업종은 통발업종과 유자망업종임. 이 경우 연승어업 어구 중 내구성을 가진 모릿줄, 닻 등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통발업종과 유자망업 종은 유실율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어구의 내용연수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제한하며 잔존가치율은 10%로 한다.

## 【붙임4】

## 어선·어구 매입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암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 · 명칭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
	및 어구의 규모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젤	기관의 마력

기타	승선원 수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선·어구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2017.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 합니다)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5】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신청인 주소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 다) 주소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 · 명칭 및 어구의 규모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 젤	기관의 마력	

기타	승선원 수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17.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해양수산부 고시가 제정되는 경우 적용)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자료】

감척사업 추진 절차

추진내용	수행 기관	추진 순서	내 용
사업안내 사업홍보	군·면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의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li> <li>○ 군(면)에서 관할 수협, 어촌계 등에 신청 안내문 발송</li> <li>○ 신청자격, 신청서 접수기간,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등 안내</li> </ul>
신청서 접수	군·면 (면→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 기타증명서 등 서류 접수</li> <li>○ 신청참가자격 유무 확인 등</li> </ul>
사업대상자 선정	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li> </ul>
어선·어구 등 실선확인 및 잔존가치평가	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자의 어선 실선확인(선박안전기술공단)</li> <li>○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 가치 평가</li> <li>○ 권역별로 정해진 감정평가기관에 한해 감정평가 실시 - 2개 감정평가업자(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li> </ul>
폐업어선 매각 및 해체처리 어업허가취소	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선·어구, 시설물 등 매각(<a href="http://www.onbid.co.kr">www.onbid.co.kr</a>) 및 폐업 어선 해체처리</li> <li>○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어선등록 말소, 어업허가 취소</li> </ul>
지원금지급 및 정산	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업지원금 지원금액과 어선·어구잔존가치 평가금액 등을 지급</li> </ul>

【참고자료】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가격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폐업지원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업 종	1.0톤 이하	2.0톤 이하	3.0톤 이하	4.0톤 이하	5.0톤 이하	6.0톤 이하	7.0톤 이하	8.0톤 이하	9.0톤 이하	10.0톤 이하	비고
복합	24,448	29,784	35,067	39,673	43,159	45,974	46,231	46,857	48,314	48,215	감척 대상
통발	24,314	30,175	36,170	39,216	43,336	46,330	47,017	52,466	-	-	감척 대상
자망	23,808	30,048	35,354	37,666	42,293	46,727	47,299	48,568	46,973	51,141	감척 대상
선망	13,993	20,636	26,839	33,033	38,997	42,667	43,356	45,879			감척 대상
들망	28,323	34,229	38,275	43,565	43,565	44,809	45,307	44,809	44,809	45,431	
안강망	24,272	27,483	34,213	40,740	43,052	45,083	47,226	48,363	-	-	
조망	14,580	18,115	22,766	23,501	26,928	30,845	32,558	33,292			
선인망	28,458	34,461	38,709	44,880	46,082	45,681	44,880	44,880	-	-	
이동성 구획어업	14,613	17,764	22,149	24,348	27,062	30,702	30,815	32,933	-	-	감척 대상

\* 톤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첫째자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금액(가격)은 소수점(천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반영함

【참고자료】

잔존가치 평가액의 표준가격

어선·어구 잔존가치는 아래 표준가격을 참고하되 기초가격 공개시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표준가격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실제 잔존가치는 해당어선의 개별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 선체·기관·의장품·어구 등 잔존가치 표준가(10년 경과)

○ 자망, 복합, 통발, 들망, 안강망, 조망

(단위 : 천원)

허가업종	강			FRP			목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자망	6,782	18,390	41,227	6,368	16,940	38,326	5,301	14,089	32,624
복합	8,040	19,651	43,556	7,626	18,201	40,655	6,811	15,350	34,953
통발	8,184	19,286	41,554	7,770	17,836	38,653	6,955	14,985	32,951
들망	6,634	18,184	75,887	6,220	16,734	72,986	5,405	13,883	67,284
안강망	18,213	30,436	54,099	17,799	28,986	51,198	6,984	26,135	45,496
조망	10,093	19,980	40,296	9,679	18,530	37,395	8,864	15,679	31,693

○ 선망

선망(1척) : 5톤			선망(2척)					
			선망(본선) : 7.93톤			선망(부속선) : 7.93톤		
강	FRP	목	강	FRP	목	강	FRP	목
47,290	45,218	41,145	87,551	84,264	77,805	55,951	52,664	46,205
선망(3척)								
선망(본선) : 7.93톤			선망(부속선) : 4.5톤			선망(운반선) : 7.93톤		
강	FRP	목	강	FRP	목	강	FRP	목
77,211	73,924	67,465	26,757	24,892	21,226	42,065	38,778	32,319

